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5 선고 2023나389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5 선고 2023나389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8 선고 2020가단5270360 판결

전문

원고(탈퇴)법무법인 A

원고승계참가인, 항소인B

피고, 피항소인1. 법무법인 C

2. E

3. F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G

변론 종결2023. 9. 13.

판결 선고2023. 10. 25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8. 선고 2020가단5270360 판결

주문

1.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 법무법인 C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8,140,098원 및 그중 42,081,891원에 대하여는 2018. 10. 25.부터, 16,058,207원에 대하여는 2018. 2. 20.부터 각 2022. 6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원고승계참가인에게, 피고 E은 42,081,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0. 25.부터, 피고 F은 16,058,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2. 20.부터 각 2022. 6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임광호

판사선의종

판사황중연